

## EU 이사회, EU 인공지능 법안 최종 승인

- 세계 첫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안, 이르면 2024. 6. 말 발효 예정 -

EU(유럽연합) 이사회가 2024. 5. 21. EU 인공지능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고 곧 발효를 앞두고 되었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별로 시행 전까지 1~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유예기간동안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업자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자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식에 따라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업자로서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대외 세미나를 EU 인공지능법의 발효 이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 입법 진행 경과
2. EU 인공지능법의 요지
3. 국내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

### 1. 입법 진행 경과

EU 인공지능 법안은 유럽의회가 2024. 3. 13. 가결한 법안을 EU 이사회가 2024. 5. 21. 최종 승인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 중 더 이상 변경될 사항은 없다는 점이 확정되고, 이제는 발효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장의 최종 서명을 거쳐서 EU 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마무리 절차만 남았고 유럽 의회 선거가 2024. 6. 6. ~ 6. 9.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서명 절차만은 그 전에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만약 유럽의회 선거 전에 최종 서명이 이뤄지고 유럽 의회 선거 직후에 EU 관보에 게재된다면 EU 인공지능법의 발효 시점을 6월 말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U 인공지능 법안은 유럽의회가 2024. 3. 13. 법안을 가결할 당시에 이미 EU 이사회와 열띤 논의를 거쳐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2024. 4. 19. 법안의 형식적인 사항이 수정된 corrigendum 버전([LINK](#))이 나왔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즉, EU 이사회가 이번에 최종 승인한 버전([LINK](#))은 위 corrigendum 버전과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은 발효된 때로부터 2년 뒤에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용 인공지능 모델(General Purpose Artificial Intelligence, 'GPAI')에 대한 규정은 그보다 앞서서 발효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지대상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욱 앞서서 발효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중에서 부속서 I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제3차 적합성 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발효일로부터 3년 뒤에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별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시행 전까지 관련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발표 후 1~2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2. EU 인공지능법의 요지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별로 나누어, ① 금지 대상 인공지능 기술(Chapter II), ② 사람의 건강, 안전, 기본권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Chapter III), ③ 특정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 기술(Chapter IV), ④ 범용 인공지능 모델(Chapter V) 각각 의무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급 체인망 상의 지위(공급자, 수입자, 배포자, 활용자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합니다.

EU 인공지능법은 위 인공지능 기술 유형 중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비중 높게 다루고 있으며,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다른 기술 유형에 대비하여 훨씬 막중합니다. 위험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EU 인공지능법 제9조 내지 제15조에 이르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17조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규정된 사항을 서면화된 내부 정책으로 마련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사업자는 상당 기간을 두고 대응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관련 사업자가 서비스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특정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각 사용 사례 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사업자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대상 인공지능 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U 인공지능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유형에 따라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거나 내부 정책으로 정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주어진 유예기간에 대해 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는 해당 유예기간 동안 자신의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을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국내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

EU 인공지능법은 EU 내 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대상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된 위치나 서비스되는 지역적 범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라 하더라도 EU 인공지능법을 자신에게 관련이 없는 외국법으로만 넘겨짚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파악하고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거나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업자가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외 세미나를 통하여 EU 인공지능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EU 인공지능법의 발효 시점이 이르면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인 6월 중으로 대외 세미나를 진행하여 관련 사업자가 그 발효 전에 EU 인공지능법에 대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hwawoo.com](mailto:kwlee@hwawoo.com)

###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hwawoo.com](mailto:klee@hwawoo.com)

### 권은구

T. (+82) 2 6182 8538

파트너변리사

E. [egkwon@hwawoo.com](mailto:egkwon@hwawoo.com)

### 정호선

T. (+82) 2 6182 8548

변호사

E. [junghs@yoonyang.com](mailto:junghs@yoonyang.com)

###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hwawoo.com](mailto:hsryu@hwawoo.com)

###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i@yoonyang.com](mailto:kangsji@yoonyang.com)